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녹화 영상자료에 대한 준거기반 내용분석의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타당화를 위한 연구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고 은 영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녹화 영상자료에 대한 준거기반 내용분석의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타당화를 위한 연구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고 은 영

인 준 서

고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녹화 영상자료에 대한 준거기반 내용분석의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 CBCA) 타당화를 위한 연구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은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술분석 방법이다. CBCA는 18개의 내용 준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준거들은 진술의 진실성 지표로써 허위로 꾸며낸 진술보다 진실한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녹화 영상자료에 대한 CBCA의 타당화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진술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진술보다 CBCA점수가 더 높은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 연구대상자는 24명이고,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 연구대상자는 15명이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 연구대상자는 의학적 증거, 용의자 자백, 목격자 진술, 물리적 증거, 전문가 행동관찰, 그리고 부모보고 및 심리검사를 고려하여 선별되었다. 연구결과,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진술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진술보다 CBCA 총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8개의 준거 중 13개의 준거가 두 집단을 유의미하게 구별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CBCA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CBCA를 통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점과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준거기반 내용분석, CBCA, 진술분석, 성폭력 피해 아동.

목 차

논문개요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5

Ⅱ. 이론적 배경 ····· 6

1. 아동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의 ····· 6

2. CBCA의 발달 ····· 7

3. CBCA 준거 내용 ····· 8

1) 일반적 요소 ····· 8

2) 표현상의 요소 ····· 10

3) 진술내용상 요소 ····· 13

4) 동기부여에 관한 요소 ····· 17

5) 범죄의 구체적 요소 ····· 19

4. CBCA 타당성에 대한 선행연구 ····· 21

1) 외국 선행연구 ····· 21

2)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 27

Ⅲ. 연구가설

1) 연구가설 ····· 29

Ⅳ. 연구 방법 ····· 30
1. 연구대상 ····· 30
1)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 ····· 30
2)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 ····· 40
2. 연구절차 ····· 41
1)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에 대한 연구절차 ····· 41
2)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연구절차 41
3. 진술분석 ····· 42
1) 분석도구 ····· 42
2) 평가자 및 평가자 훈련 ····· 43
3) 자료처리 및 분석 ····· 44

Ⅴ. 연구 결과 ····· 45
1.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연구대상 아동의 특징 ····· 45
1) 성별 및 연령 ····· 45
2) 피해 횟수 ····· 46
3) 피해 유형 ····· 46
4) 피해 장소 ····· 47
2.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연구대상 아동이 특징 ····· 48
1) 성별 및 연령 ····· 48
3. 성폭력 피해 가해자의 특징 ····· 49
1) 가해자의 유형 ····· 49
2) 가해자의 전과 횟수 ····· 50

4. 성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따른 CBCA 점수 ····· 51
1) CBCA 총점 ····· 51
2) 개별 CBCA 준거 점수 ····· 52
5. 기타 분석 ····· 55
1) 연령과 CBCA 총점 간의 관계 ····· 55
2) 성폭력 피해 사건변인과 CBCA 총점 간의 관계 ··· 55
3) 성폭력 피해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연령 ····· 56

Ⅵ. 논의 ····· 58
1. 결과에 대한 논의 ····· 58
2. 의의 ····· 66
3. 제한점 ····· 61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CBCA 준거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 26
〈표 2〉 항문 생식기 주변의 증거 ····· 33
〈표 3〉 의학적 정보 평가 기준 ····· 34
〈표 4〉 용의자 자백 평가 기준 ····· 35
〈표 5〉 목격자 증거 평가 기준 ····· 36
〈표 6〉 물리적/신체적 평가 기준 ····· 37
〈표 7〉 행동증상 평기 기준 ····· 38
〈표 8〉 성폭력 피해 아동의 부모보고와 심리검사 평가 기준 ····· 40
〈표 9〉 채점자 간 상관계수 ····· 43
〈표 10〉 Kappa 계수 ····· 43
〈표 11〉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연령 ····· 45
〈표 12〉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성별 ····· 45
〈표 13〉 피해 횟수 ····· 46
〈표 14〉 성피해 유형 ····· 47
〈표 15〉 피해 장소 ····· 48
〈표 16〉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연령 ····· 49
〈표 17〉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성별 ····· 49
〈표 18〉 가해자 유형 ····· 50
〈표 19〉 성관련 범죄 전과횟수 ····· 50
〈표 20〉 성관련 범죄 외 전과횟수 ····· 51
〈표 21〉 성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따른 CBCA 총점 평균 ····· 51

〈표 22〉 집단 간 개별 CBCA 준거 점수 ····· 54
〈표 23〉 연령과 CBCA 총점 간의 관계 ····· 55
〈표 24〉 성폭력 피해 사건변인과 CBCA 총점 간의 관계 ····· 56
〈표 25〉 성폭력 피해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연령분석 ····· 57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국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성폭력 피해자수는 2001년 39,627명, 2002년 48,112명, 2003년 51,431명, 2004년 23,28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세 이하 피해자의 비율은 2001년 4,849(12.2%), 2002년 5,598명(11.6%), 2003년 6,928(13.6%), 2004년 3,513명(15.1%)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안명옥, 2005).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과 그 가족들은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부분 심리 ·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겪은 성폭력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영향은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고 일생동안 지속 또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겪은 연령이 어릴수록 외상의 상처가 더 깊고 광범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후유증의 심리 · 정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피해초기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고, 이러한 초기의 정서가 장기화되면 우울, 불안, 대인기피, 낮아진 의욕, 심한 분노와 적개심, 기억상실이나 현실감 상실 등을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로 신체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 경험은 성적발달에 영향을 미쳐 나이에 적합하지 않은 성적 행위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이후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반대로 성행위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많은 곤란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학습장애, 무단결석, 학교생활을 중단하는 경우와 가출 및 비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심리 · 정서적인 측면의 영향을 받아 대인관계에서 친

밀감 형성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발전하여 사회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전우관, 2003).

이렇듯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아동 성폭력 피해 사건은 이를 조사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아동이 성폭력 피해자인 사건인 경우 폭력이나 신체적 강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적인 외상이나 다른 증거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는 아동에게 비밀을 요구하고, 성폭력은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여 목격되기가 힘들며, 가해자는 자신이 유죄임이 거의 증명되었을 때조차도 거의 자백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Undeutsch, 1988). 이러한 특징들로 인하여 아동이 실제로 성폭력의 피해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피해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아동의 기억을 기초로 한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동은 정신적 ·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성인과 비교할 때 시간이 갈수록 부정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억인출과정에서 유도질문과 같은 조사방법이 기억의 왜곡을 유발하여 실제 경험한 사건과 상상을 혼동시키고 허위기억을 만들어 낼 수 있다(Fivush, 1998). 따라서 아동이 성폭력 피해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경과한 뒤에 진행되는 공판과 수사과정에서의 반복출석 및 반복진술을 감당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아동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성폭력 피해 사건은 아동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으로 아동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 자체가 아동의 입장에서는 큰 스트레스가 된다(Goldstein, 1999). 이에 반복출석과 반복진술은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제 2의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반복적인 출석과 진술에 따른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을 CD로 녹화하여 수사와 재판의 증거로 활용하기로 했다(사이버 경찰청, 2003).

영상매체물에 진술을 기록하여 재생할 경우 그 기록의 정확성은 사람의 지각 및 기억능력을 훨씬 능가한다. 뿐만 아니라 영상매체물은 조서작성자의 언어적 표현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진술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진술태도와 억양, 조사관의 질문내용 및 반응 등 아동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의 충분한 보장 및 진술 거부권의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진술의 임의성과 증명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서보학, 2004). 성폭력특별법 제21조의2 제3항은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술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그의 출석 없이도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정신적 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며, 그 자료도 증거로 활용케 함으로써 경찰 ·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불필요한 반복조사와 심리를 하지 않게 하여, 아동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박종선, 2006).

이러한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 조사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끊임없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피의자와 그의 변호사는 아동의 진술에 대해 의심하고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내세워 아동의 이야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Ceci & Bruck, 1995). 아동은 성인에 비해 기억력이나 언어능력, 표현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동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주된 결과이다(Bull, 1996). 그러나 아동의 기억과 표현이라고 해서 전부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아동의 진술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보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화된 지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박종선, 2006,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최근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 및 치료해주는 해바라기 센터나 다른 기관의 전문가들이 성폭력 피해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 많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진술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친 전문가의 평가가 종종 법정에서 독립적인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도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아동의 성폭력 피해가 진실이라는 선입관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폭력 피해 아동을 평가하는 전문가에게도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 CBCA)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여겨지는 아동의 진술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술 분석 방식이다(Vrij, 2000).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은 서유럽의 국가에서는 전문가의 CBCA를 통한 진술 분석이 실제 법정에서 전문가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Ruby & Brigham, 1997; Vrij, AKehurst, Soukara, & Bull, 2002 재인용).

2. 연구의 목적

CBCA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코카시안 문화권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CBCA 타당성에 대한 결과를 모든 문화권의 아동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Ruby & Brigham, 1998). 따라서 국내에서도 CBCA를 타당화 시키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3개(이미선, 2004; 조은경, 2004; 박종선, 2006) 이루어졌다. 축적된 국내 CBCA 타당화 연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국내 선행연구들은 모두 아동의 진술을 녹취한 '진술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진술조서는 작성자의 언어로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므로 언어표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진술 전체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을 조서에 기재하기 때문에 축소 및 생략 등 상당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아동의 원진술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진술녹화 영상자료를 대상으로 CBCA 타당화 연구를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의

아동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는 우선 아동의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을 보면 형법 제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서는 13세 미만의 부녀 · 13세 미만의 사람을 칭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의 2(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서는 13세미만의 여자, 13세미만의 사람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아동성폭력이란 개념과 관련해서는 학대, 성폭행, 성폭력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중 아동성학대가 가장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심영희, 1998). Sgroi 등(1985)에 의하면 아동 성학대는 '정서적, 신체적 및 인지적 발달을 결여하고 있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송윤정, 2006, 재인용). 성인 혹은 청소년 가해자의 위치는 아동의 연령, 의존성 및 복종적 지위와는 대조적으로 권위와 힘, 그리고 지배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 가해자는 위와 같은 상대적인 권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은근히 혹은 직접적으로 성적 복종상태를 강요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성폭력은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주는 행위로 주로 신체적인 학대에 국한 된 정의이기 때문에 성학대는 성폭력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며, 대부분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는 주로 아동성학대라는 개념을 쓴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동성학대라는 개념이 다양한 구체적 성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일부는 사법

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심영희, 1998).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로서 성기나 기타 신체적인 접촉을 포함하여 강간 · 성적행위 · 성기노출 · 자위행위 · 성적 유희 등 성인의 성적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모두 말한다(송윤정, 2006, 재인용).

본 연구에서 아동 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자신의 성적인 충족을 위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인 행위로는 성기추행, 신체추행, 폭력 동반(신체적 폭력을 동반), 구강성교, 강간, 사건 목격(형제, 자매, 친구가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 가해자 성기 노출, 구강 추행, 드라이 섹스(아동의 성기외의 신체부분에 가해자의 성기 마찰), 음란물 노출, 성희롱(언어를 통한 성희롱)을 포함한다.

2. CBCA의 발달

CBCA는 성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진술분석으로 1950년대 독일의 여러 선구자들에 의해 발달하였다(Steller, 1988). CBCA의 최초 창시자이자 대표적인 학자인 Undeutsch는 “실제 사건의 기억으로부터 파생된 진술은 허구 또는 상상에 기초한 진술과는 내용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을 기초로 하여 사실과 허위 진술을 구별할 수 있는 몇 개의 준거들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초기 이러한 준거들은 체계적인 체제와 정확한 정의 그리고 구별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Steller, 1989). 따라서 Steller와 Koehnken(1989)은 내용 범주를 새롭게 조직화하여 19개의 준거로 체계화된 CBCA를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진술 분석 방식은 더 나아가 진술타당도 평가(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

SVA)라는 통합된 절차로 발달되었다(Steller, 1988). SVA는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반구조화된 (semi-structured) 면담을 통해 진술을 얻는 단계이다. 진술 분석에 앞서 피면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담자는 적절한 촉진 질문 등을 통해 면담자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면담을 실시하여 진술을 얻어낸다. 두 번째 절차는 면담을 통해 얻어진 진술의 내용적인 측면과 동기적인 측면 등을 CBCA를 통해 분석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타당도 평가는 CBCA 점수가 진술의 진실 여부가 아닌 다른 외적인 영향을 받았는지를 평가한다.

3. CBCA의 준거 내용

1) 일반적 요소(General Characterisrics)

첫 번째 범주인 일반적 요소는 진술 전체의 일반적인 요소와 관련하여 진술 증명력을 개괄적으로 평가하는 범주이다. 분석의 첫 단계로 간주될 수 있는 일반적 요소는 상세한 진술 내용을 인용하지 않고도 평가될 수 있다. 이 범주를 통해 전체적으로 논리적이지 못하고, 사건에 대해 묘사하는 양이 적은 진술은 근본적으로 신뢰할만하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즉 진술이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진술을 제시하는 방식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와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① 논리적 일관성(Logical Structure) [요소1]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

로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내용에 일관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요소로서, 진술자가 나타내는 진술태도 전체가 대상이 된다. 즉, 진술이 비일관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다면 진술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하거나 신문할 경우 거기에서 나온 진술을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는 진술이 있는지, 모순되는 진술은 없는지, 생략된 진술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의 변동 여부보다 전체적인 일관성으로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하다.

② 체계적이지 않은 표현 (Unstructured Production) [요소2]

진술이 시간적 순서를 반드시 따르지 않고 산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술하는 방식의 자연스러움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실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진술할 때 정서적인 각성에 의해 구조화되지 않은 형태로 진술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여, 너무 구조화된 진술일 경우 신뢰도가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험하였던 진실한 진술은 매우 논리적인 과정으로 설명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 아동의 진술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구조화되지 않은 채 나타나는 진술과 전체적인 진술의 비일관성과는 차이가 있는데, 구조화되지 않은 제시는 단지 이야기들이 흩어져 있으나 이러한 이야기 구성 요소의 일관성은 유지된다. 그러므로 이야기가 흩어져 있다고 해서 아동의 진술이 비일관적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Vrij, 2000).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할 경우, “그 오빠가 갑자기 가슴을 만졌어요. 그래서 내가 싫다고 했더니 저를 때렸어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고추를 넣었어요.”라고 진술한 후, 성기를 삽입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때리고 난 다음에 핸드폰 카메라로 가슴하고 얼굴 사진도 찍었었어요.”라고

폭행과 성기 삽입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진술하는 것이다.

③ 세부내용의 풍부함 (Quantity of Details) [요소3]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세부내용의 묘사를 진술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아동은 꾸며서 이야기하는 아동보다 풍부하고 상세한 세부묘사를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꾸며서 허위로 진술하는 아동의 경우 그들이 이전에 진술한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거짓이 발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세부묘사의 양은 아동진술에 대한 증명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2) 표현상의 요소 (Specific Contents)

두 번째 범주는 '구체적인 내용 범주'로 불리며. 이 범주에서는 진술에서 나타나는 표현방식과 문장 형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진실을 이야기 하는 아동과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아동을 구별한다.

① 문맥상 깊이 (Contextual Embedding) [요소4]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적인 특징과 발생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황적인 특징과 같이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점에 대한 정보가 풍부할 때 본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짓말을 하는 아동은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대신 간단한 진술을 한다든지 또는 행위를 대충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 하는 아동은 이러한 시간적, 상황적 특징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제가 엄마 심부름을 하러 가게에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어떤 오빠가 '돈 있어? 있으면 좀 줘봐' 라고 말했어요. 무서워서 있는 대로 돈을 다 주고 빨리 집으로 걸어오는데 계속 그 오빠가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돈을 더 달라고 했어요. 진짜 무서웠는데, 그 오빠가 아무래도 제가 돈이 더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찾아봐야겠다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그냥 따라갔는데 오빠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키스를 했어요"

② 상호작용의 묘사 (Descriptions Of Interactions) [요소5]

상호작용의 기술은 사건 동안 가해자와 관련된 상호작용이 진술에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는 준거이다. Raskin과 Esplin(1991)은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요소, 즉 가해자와 관련된 상호작용이어야 하며, 행동과 반응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사건을 경험한 아동으로부터 나오는 진술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더 포함할 것이라고 가정되는 반면에, 꾸며서 허위로 이야기하는 아동은 그들의 진술 속에 상호작용을 진술하기보다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행동을 기술하는 방식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상한 소리를 내고 앞, 뒤로 흔들라고 하면서 계속 가슴을 만지더니 OO가 성기를 주물러 달라고 하여(가해자의 행동) 제가 싫다고 하였더니(피해자의 반응) 안 만지면 때리겠다고 하여(가해자의 행동) 제가 겁이 나서 한참 만졌더니(피해자의 반응) 이번에는 저보고 바닥에 누우라고 하여(가해자의 행동) 누웠더니(피해자의 반응)..." 이와 같은 진술은 가해자와 관련된 행동과 반응이 존재하는 진술이다. 상호작용은 실제 경험한 아동의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 한다.

③ 대화의 인용 (Reproduction of Conversation) [요소6]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그 당시의 상황 그대로 옮

겨온 것처럼 진술하는지 평가하는 요소이다. 이 요소는 거짓을 말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아동의 진술에서도 부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존재할 경우 아동이 성폭력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성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은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할 때 축어적으로 재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Raskin & Esplin, 1991).

예를 들어, 피해아동의 진술에서, “하지마”라고 했더니 “엄마한테 말하면 죽인다”고 하였고 “싫다”고 하니까, “목을 조르고 꼬집어서 무섭고 아팠어요”라고 진술했다면 이 요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아동이 “제가 멈추라고 했는데도 계속했어요.”라고 진술했다면 이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뒤의 예문은 가해자와의 대화가 아니고 아동이 혼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④ 사건도중 예상치 못한 일의 발생 (Unexpected Complications during the Incident) [요소7]

사건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가해자의 자발적인 종료 등으로 인해 사건이 중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복잡성을 언급 하는 것으로, 진술에 혼란스럽거나, 방해가 되거나, 좌절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뢰도를 높여준다. 이러한 요소는 꾸며낸 진술에서는 표현하기 힘들며,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난다. 꾸며서 진술하는 경우에는 행위가 중단되었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 등을 적합하게 묘사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전에 아빠가 나쁜 짓 할 때 제가 ‘아빠 하지마’라고 말했는데 고모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 ‘뭘하지 말라는 거니’하셨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빠만 쳐다보았더니 아빠는 자는 척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빠가 자는데 떠들지마’라고 하면서 들어가 버렸어요.” 이러한 아동의 진술은 아버지가 자신을 추행하는 중 고모할머니

가 나타나서 사건이 중단되었다는 진술이다.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아동이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3) 진술내용상 요소 (Peculiarities of the Content)

세 번째 범주는, '진술의 내용상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술의 문장 내용에 나타나는 요소를 살펴보는 범주로서, 꾸며서 진술하는 아동은 실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사건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꾸며낼 필요가 없어 꾸며내지 않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꾸며낼 수 없기 때문에 진술에 특별히 나타날 수 없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독특한 세부내용 (Unusual Details) [요소8]

사건이나 사물, 가해자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어떤 독특한 부분이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세부묘사가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실제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은 이러한 묘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허위로 독특한 세부묘사를 하는 경우에는 쉽게 발각될 수 있으며, 또한 진술하는 아동 역시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갖기 때문에 쉽게 나타나기 어려운 요소이다. 따라서 독특한 세부묘사가 아동의 진술에 나타난다면 아동의 진술은 실제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똥꼬하고 잠지를 괴물이 손가락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으니까 아팠고, 애기 손가락과 발가락을 괴물이 손으로 꺾고 깨무니까 아팠고, 귀도 깨물고 등은 할퀴고 때리고 엉덩이도 때렸어요." 이와 같이 가해자에 대한 '괴물'이라는 독특한 표현은 진술은 아동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진술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써 가해자가 피

해 아동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동이 가해자에 대해 “머리가 빡빡이고 뒷머리 가운데에 점이 있고 한쪽 팔이 없고 눈이 짝짝이고 등에 화상 같은 흉터가 있어요”라고 진술했다면 독특한 묘사로 여겨지는데 구체적인 가해자의 특징은 경험하지 않은 아동은 지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② 부가적인 세부내용 (Superfluous Details) [요소9]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가적인 내용으로 생략해도 무관한 부분에 대해 세부묘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진술이며, 꾸며내서 진술하는 아동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성에 관한 충분한 지식 없이 성적 사건에 대한 부가적인 세부묘사를 포함하는 것은 아동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허위의 진술일 경우에는 나중에 무엇을 말했는지에 대해 기억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많은 부가적인 묘사를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화장실에서 동생과 목욕하는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의 예에서 “제가 화장실 문을 닫고 잠갔는데 그러고 약 5분쯤 지나 옆에 화장실에서 아저씨가 ‘대한민국’하고 소리쳐 제 동생이 박수를 쳐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예로써는 “이모부가 저한테 술을 마셔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안 마신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마셔도 되는 거라고 자꾸 마시라고 해서 한 잔을 마셨어요.”의 진술이다. 이러한 진술은 성폭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설명하는데 필수 요소는 아니나 아동은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해하진 못했지만 정확하게 진술한 세부내용 (Accurately Reported Details Misunderstood) [요소10]

자신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진술하였으나 조사자는

진술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는 아동이 성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다. 아동은 자신이 경험한 행동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아동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서 행동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있잖아요. 아빠 고추에서 나오는 물이 이상했어요. 밀가루처럼 그랬는데 조금 나왔는데 침처럼 뭉쳐 있구요. 당근냄새가 났어요.”라고 이야기 하였다면 아동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진술하였으나 조사자는 그것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준거는 성적 행동이 존재하지 않았던 아동에게서는 꾸며지기 어려우며, 성인에 의해 조작되는 것 역시 어렵다.

④ 간접적인 관련 요소 (Related External Associations) [요소11]

직접적인 행위와 관련된 진술은 아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진술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언니들과 똑같이 했어요. 언니들에게도 다 그렇게 해요.”, “언니들과 전체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따로 따로 들어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저 말고도 다른 신도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 사건이 존재했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주관적 심리상태 (Subjective Mental State)[요소12]

진술자 자신의 주관적인 인지 또는 정서 상태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가 진행되는 동안의 생각, 반응, 감정, 불안, 초조, 감정의 기복, 감성적 관계에서의 변화 등을 느낄 수 있다. 조작된 진술은 보통 주관적

심리상태가 결핍된다. 이러한 허위진술은 실제의 설명보다 더 일관적이며 동시에 주관적 심리상태의 상세사항은 부족하다. 이 요소와 관련해서는, 실제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반면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 회상하는 아동에게 있어서는 빈번히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여, “저는 마음속으로는 싫은데 때릴까봐 겁이 나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혹은 “제 몸 여러 군데를 만지니까 저는 당황하고 또 창피해서”의 진술은 아동이 그 당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진술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제가 동생들이 잠에서 깰까봐 작은 소리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라는 진술은 사건 당시 자신의 인지상태를 표현한 진술이다. 이와 같은 진술 표현 방식은 모두 아동이 사실을 이야기 할 때 더 많이 나타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⑥ 가해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진술 (Attribution of Perpetrator's Mental State)[요소13]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상태를 다른 정보나 행동을 통해 추론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꾸며진 이야기를 할 때는 나타날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8세 이하의 아동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요소는 어린 아동들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일어나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쳤는데 아팠는지 얼굴을 찡그렸어요.” 라든지, “밖에 사람이 지나갈까봐 걱정되었는지 자주 주변을 살폈습니다.”와 같은 진술은 가해자의 생각이나 정서를 진술인이 추론한 진술로 볼 수 있다.

4) 동기부여에 관한 요소 (Motivation-Related Contents)

네 번째 범주는 진술자의 동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가 존재하는 지와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은 간혹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이혼과정에서 한 부모가 다른 부모를 고소하기 위해 아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종용하는 경우 등 어느 한쪽의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한다. 이러한 아동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진실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① 자발적인 수정 (Spontaneous Corrections)[요소14]

자신의 진술을 자연스럽게 수정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특히 복잡한 사건을 진술할 때는 아동은 완전히 일관적인 진술을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아동은 자신이 했던 진술에 대해 부가설명하거나 수정하여 설명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반면, 꾸며내어 진술하는 아동은 자신의 진술이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여 더 조심하고 진술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삼가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 5학년 마칠 때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재차 질문하자 “사실은요, 10살 때부터 인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죠.”라고 진술한 것이나,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난 것이 8시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아까 8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7시 50분이예요.”라고 진술하는 것은 꾸며서 진술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극히 드물다.

② 기억부족 시인 (Admitting Lake of Memory) [요소15]

기억이 잘 나지 않음을 자연스럽게 시인하는 것으로 “내 생각으로는”

“아마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등과 같이 진술의 일부분이 부정확 할 수 있음으로 표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의 부족에 대한 시인이 직접적인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알지 못함을 자연스럽게 시인하는 것으로, 허위진술보다는 진실한 진술에서, 성인보다는 아동의 경우 이와 같은 요소가 더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어떻게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워낙 어릴 적부터 다녀서 언제부터 다녔는지 잘 모르겠고...어릴 적 기억이라서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는 전혀 몰라요”라는 진술은, 진술자 자신이 기억이 잘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정보를 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어떠한 공격을 했는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는 진술은 앞서 설명한 예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진술자가 주변적인 상황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사건의 핵심부분에 대해 기억의 부족을 가장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③ 자기 자신의 진술에 관한 의심제기 (Raising Doubts About One's Own Testimony) [요소16]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은 “제 말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등과 같이 자신이 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음을 염려하고, 자기 진술이 부정확할 수 있는 것을 걱정하는 언급이 포함된다. 실제 범죄를 경험한 아동은 범행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어른에게 이야기한다하더라도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를 표현한다. 따라서 아동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자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자발적으로 이야기 하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동이 “잘 말하지 못할 것 같은데...”와 같은 진술을

했다면 이 역시 자신에 대한 의심 제기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자기 비난 (Self-Deprecation) [요소17]

"내가 거기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혹은 "내 잘못도 크다" 등과 같이 가해자의 죄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진술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성학대를 받은 아동은 종종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따라간 내가 잘못이다." 혹은 "정말 싫은데요...아저씨가 그렇게 하고 나면 돈을 주니까 친구하고 같이 과자 사먹으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라고 진술했다면 이는 사건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비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⑤ 가해자 용서 (Pardoning the Perpetrator) [요소18]

특히, 근친강간 등 가족 내 성폭력 피해아동은 성인 가해자에 대해 상충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조금만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은 "불쌍하잖아요"와 같은 진술은 가해자의 행동을 용서해주거나 또는 변명을 해 주거나, 사건의 범위나 성적 행동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용서하는 요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5) 범죄의 구체적 요소 (Offense-Specific Elements)

① 범죄의 전형성에 대한 평가 (Details Characteristic of the Offense) [요소19]

다섯 번째 범주로서, 범죄의 전형성에 대한 세부묘사가 존재하는 지를

평가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진술 그 자체의 생동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내용'범주와 다르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보다 덜 폭력적이고 장기간 지속되며 약한 추행에서 삽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겪는다. 근친상간 사건에서 아동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술하였다면 이 요소에 부합되는 진술로 볼 수 있다.

'범죄의 전형성에 대한 평가'인 19번 요소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과 얼마나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이 진술하는 내용이 전형적인 범죄에서 나타나는 방식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음은 물론, 어떠한 사건이 '전형적'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또한 현재로서는 없다. 또한 19번 요소는 기존연구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다른 요소들과 달리 배점이 부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도 범죄의 구체적 요소는 사용하지 않았다.

4. CBCA의 타당성에 대한 선행연구

1) 외국 선행연구

CBCA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아동과 거짓을 말하는 아동을 신뢰롭게 구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연구는 여러 주제를 가지고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CBCA 연구는 생태학적 타당도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실험의 단순 참여자 또는 목격자는 실제 성폭력 피해자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실 연구는 대부분 성인 목격자 혹은 참여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CBCA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진술 분석 방식이라는 데 있어 CBCA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BCA의 타당성은 실제 성폭력을 주장하는 아동의 사건을 바탕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CBCA의 타당성에 대해 연구한 것은 지금까지 4개의 사례가 보고되었다(Esplin et al.,1988; Boychuk,1991; Lamb, et al.,1997; Craig, et al., 1999). 첫 번째 실제 성폭력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CBCA 연구는 Esplin 등 (1988)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3세에서 17세의 아동 피해자 진술을 CBCA를 통해 분석하였다. '성폭력을 확실히 경험한 것' 같은 집단과 '성폭력이 의심스러운' 두 집단은 용의자가 자백을 했는지의 여부와 법정 판결을 기초로 하여 분류한 후 한 사람의 평가자에 의해 두 집단 간의 CBCA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각 준거들은 0점에서 2점까지 평가되었는데, 결과는 성폭력이 확실한 평균은 24.8이었으며, 의심스러운 사례의 평균은 3.6으로 매우 극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확실한 집단의 최저 점수와 의심 집단의 최고 점수가 겹치지 않아 두 집단을 완벽하게 구별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19개의 개별 준

거 중 16개의 준거가 진실한 아동의 진술에서 유의미하게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Esplin 등 (1988)의 초기 연구는 피해 확실 집단과 의심 집단의 CBCA의 점수가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유에서 비판을 받았다. 특히 Wells와 Loftus(1991)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몇 가지 대안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 첫 번째는 '확실한 집단'과 '의심스러운 집단'에 포함된 아동의 연령차이다. Esplin(1992)의 연구에서는 '확실한 집단'보다 '의심스러운 집단'에 나이가 어린 아동의 수가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연령 차이는 연구에서의 결과가 CBCA의 결과가 아닌 연령의 효과일 수 있는 대안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확실한 집단'과 '의심스러운 집단'의 구별에 있다. 확실한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용의자의 자백과 재판에서의 판결을 사용하였으나, 용의자가 자백을 했다거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건의 아동이 실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때문에 아동이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비판은 Esplin 등의 연구에는 극적인 집단만을 포함하였다는 것으로 매우 그럴듯한 아동과 매우 그럴듯하지 않은 아동의 진술만을 분석하여 CBCA의 효과를 극대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Esplin 등 (1988)의 연구는 단지 한 명의 평가자에 의해 분석되었기 때문에 평가자의 능력에 대한 검증은 되지 않았으며, 평가자의 편향을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Esplin 등 (1988)의 연구결과에 대한 비판을 보완하기 위해 Boychunk(1991)은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3명의 평가자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확고한-의심스러운 집단에 '학대당한 것 같은' 집단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Esplin 등의 연구보다 집단 간 차이가 적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19개의 준거 중 13개의 준거에서 학대당한 것 같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CBCA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세 번째 연구는 Lamb 등 (1997)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 연구는 4세-12

세 성폭력 피해 아동 98명의 진술을 대상으로 하였다. Lamb(1997)의 연구는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학적 정보, 목격자 진술, 피의자 자백, 물리적/신체적 증거, 그리고 폴리그래프 등의 5가지 증거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증거들을 기초로 하여 아동이 실제로 성폭력의 피해를 경험했는지를 '피해자가 매우 그럴듯함'부터 '매우 그럴듯하지 않음'까지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은 CBCA 14개의준거를 사용하여 3명의 평가자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가 유력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CBCA 총점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14개의 준거 중 단지 6개만이 확실한 집단과 의심집단을 유의미하게 구별해 주어 기존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가장 최근의 현장연구는 Craig 등(1999)에 의해 실시되었다. Craig(1999)는 3세에서 16세 사이의 48개의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을 분석하였는데 진실집단과 거짓 집단을 구별하기 위해 자백 그리고/또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사용하였다. 폴리그래프에서 용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확실한'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무죄로 판정된 경우 '매우 의심스러운' 집단으로 포함시켰다. 진실과 거짓 집단의 CBCA 총점은 Lamb 등의 연구와 동일하게 14개의 준거를 사용하여 계산되었으며, 그 결과 확고한 사건이 의심스러운 사건의 CBCA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장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을지라도 CBCA가 성폭력 피해가 확실한 집단과 피해가 확실하지 않은 집단을 유의미하게 구분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실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Vrij(2004)는 앞에 기술한 4개의 실제 성학대를 주장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1개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연구(Parker & Brown, 2000) 그리고 17개의 실험실 연구를 종합하여 CBCA가 진실한 집단과 거짓집단을 잘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실

연구는 전형적으로 비디오로 녹화된 사건을 보여주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로 하여금 진실 혹은 거짓 진술을 하게 하거나 또는 실험 참가자기 어떠한 상황을 경험한 뒤(예를 들면, Simon 가라사대 게임),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진실하게 혹은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요청 받는다. 실험참가지는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Vrij(2004)는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CBCA 총점에 대해 분석한 12개의 연구 중 11개(92%)에서 진실한 진술의 CBCA 총점이 거짓진술의 CBCA 총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Ruby & Brigham, 1998)만이 진실 집단과 거짓 집단 간 CBCA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준거들에 대해 살펴보면 3번(세부묘사의 양)은 가장 많은 경험적 지지를 얻었는데 20개의 연구 중 16개(69%)의 연구에서 진실한 집단의 3번 준거점수가 거짓집단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번(맥락상의 깊이)과 6번(이야기의 재현)은 각각 16개의 연구 중 11개(69%)의 연구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2번(이야기의 재현) 역시 14개의 연구 중 9개(64%)의 연구에서 진실한 아동의 진술에서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8번(독특한 세부묘사), 5번(상호작용의 기술), 1번(논리적 일관성)이 전체 중 53%의 연구에서 지지를 얻었다. Lamb 등(1997)의 연구에서는 2번(구조화되지 않은 제시), 3번(세부묘사의 양), 4번(문맥상 깊이), 5번(상호작용 기술), 6번(이야기의 재현), 그리고 8번(독특한 세부묘사)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17번(자기비난)의 경우 실시된 모든 연구에서 진실과 거짓 진술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번(정확하게 보고하였으나 이해하지 못한 세부묘사)의 경우도 8개의 연구 중 단지 1개(12%)의 연구에서만 지지를 얻었다. CBCA 타당성 평가에서 아동 진술의 진위여부와 동시에 고려해야 할 요인은 아동의 연령이다. 아동의 연령이 CBC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Anson, Golding & Cully, 1993; Craig et

al., 1999; Lamb et al., 1997; Boychuk, 1991; vrij, Akehurst, Soukara, & Bull; 2002).

연령이 CBCA 점수와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나이가 많은 아동의 진술은 그 보다 어린 아동의 진술보다 CBCA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Anson 등(1993)은 4세에서 12세까지 아동 진술을 CBCA를 통해 분석한 결과 나이가 많은 아동의 진술이 그보다 어린 아동의 진술에 비해 더 높은 CBCA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2번(논리적 구조), 4번(맥락상의 깊이), 5번(상호작용의 기술), 6번(이야기의 재현), 18번(가해자의 용서)과 19번(범죄특징의 세부묘사) 준거는 연령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oychuk(1991)의 연구에서 역시 몇 개의 준거가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5번(상호작용의 기술), 13번(가해자의 정신 상태), 15번(기억의 부족 시인), 그리고 17번(자기 비난)은 4-7세 아동에 비해 8-16세 아동의 진술에서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Buck 등의 연구 또한 CBCA 총점과 19개의 준거 중 13개의 준거가 나이와 상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004, 이미선, 재인용). 어린 아동이 성인이나 그 보다 큰 아동에 비해 CBCA 점수가 더 낮았지만 어린 아동이라 할지라도 거짓 집단보다 진실한 집단에서 CBCA 점수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Vrij, 2002).

표 1. CBCA 준거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CBCA 준거지지	수/연구 수	지지된 비율(%)
1. 논리적 일관성	10/19	53 %
2. 체계적이지 않은 표현	9/14	64 %
3. 세부묘사의 양	16/20	80 %
4. 문맥상 깊이	11/16	69 %
5. 상호작용의 묘사	9/17	53 %
6. 대화의 인용	11/16	69 %
7. 사건도중 예기치 못한 일의 발생	5/15	33 %
8. 독특한 세부내용	9/17	53 %
9. 부가적인 세부내용	6/17	35 %
10.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확하게 진술한 세부내용	1/8	12 %
11. 간접적인 관련 요소	4/10	40 %
12. 주관적 심리상태	6/15	40 %
13. 가해자 정신 상태에 대한 진술	5/14	36 %
14. 자발적인 수정	6/17	45 %
15. 기억부족 시인	6/13	46 %
16. 자기 자신의 진술에 관한 의심제기	2/11	18 %
17. 자기 비난	0/6	0 %
18. 가해자 용서	2/5	40 %

출처: Vrij, 2004

이러한 실험연구와 현장연구의 결과는 CBCA가 매우 유용하며,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과 꾸며낸 허위진술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또한 이는 실제 재판결과에서도 입증되었으며, 독일 법정에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발생한 아동성폭력사건 중 40,000건 이상의 진술분석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어 진술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CBCA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물론,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은 서유럽의 국가에서는 실제 법정에서 전문가의 진술분석 결과가 재판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비록 진술분석이 창안되고 발달된 독일과 법적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분석기법은 아동 성폭행 사건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잘 합치되는 것이라 하여 법정에서 전문가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최초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제8조의2(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한 394건의 피의사건이 조은경과 이미선에 의해 CBCA 적용조사가 실시되었다. 394건의 사건 중 1997년 Lamb 등이 제안한 기준을 고려하여 ① 피해아동의 진술시 연령이 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인 경우와, ② 아동의 진술 이외에 아동이 성폭력을 경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③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건의 경우, ④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진술조서에 나타난 조사자의 질문이 명백하게 강압적이거나 유도질문이 사용된 경우 또는 부모가 대신 진술한 경우가 제외된 총 82명의 피해자 진술조서가 분석되었다. 진술한 아동의 성별은 여자아동이 75명, 남자아동이 7명이었으며 최초 피해당시의 평균연령은 8.56세, 진술당시 연령은 평균 8.83세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부터 진술녹화가 의무화되어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 연구가 시작된 시점에서는 진술녹화 된 많은 사건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로 분석이 불

가능하여 진술의 녹취본 대신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가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 피해가 확실한 집단이 64명(78%), 애매집단 10명(12.2%), 의문집단 8명(9.8%)으로 피해가 확실한 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4년 Vrij의 연구와 Lamb 등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06년 아동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미 독일, 스웨덴,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진술신뢰도평가(SVA)' 기법을 고찰하는 연구가 박종선에 의해 실시되었다. SVA는 1단계로 아동과 조사자와의 적정한 면담절차를 구성하고 있으며, 2단계는 이러한 적정절차를 통해 확보된 아동의 진술을 심리학적 분석방법인 CBCA를 통해 분석한 후, 3단계인 분석된 결과에 대해 외부적인 영향은 없었는가 등을 판단한다. 이러한 SVA 기법이 우리나라 법원과 형사절차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증의 방법으로 실제사례 3건을 분석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SVA기법에 의한 증명력 판단이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으나, SVA는 형사절차에서 매우 유용한 증명력 판단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Ⅲ.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사실에 대한 진술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허위(상상) 진술보다 CBCA총점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사실에 대한 진술과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허위(상상) 진술을 유의미하게 구분해주는 개별 준거들이 존재할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 사이에 서울 원스톱 지원센터, 경기북부 원스톱 지원센터, 경기남부 원스톱 지원센터, 인천 원스톱 지원센터로 방문한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원스톱 지원센터란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수사, 법률, 응급의료를 동시에 지원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곳이다. 그러나 원스톱 지원센터로 접수된 사건이라고 해서 전부 성폭력 피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Horowitz 등(1994)은 진술분석에 앞서 아동의 진술 이외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 아동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연구 결과에 대해 다른 대안적인 설명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 피해 사건은 그 특성상 목격되기 힘들고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 지금껏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확실하고 안정된 평가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로부터 수렴된 정보를 통합해야 한다(Horowitz. et al.,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현장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구별했던 조은경(2004) 연구의 분류기준을 기초로 하였다. 조은경(2004)은 의학적 증거, 용의자 자백, 목격자 증거, 물리적/신체적 증거, 행동증상인 총 5개의 증거들을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조은경(2004)이 사용한 의학적 증거, 용의자 자백, 목격자 증거, 물리적/신체적 증거의 4가지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새로이 채규만 연구팀이 2007년에 실시한 '성폭력 피해 아동 행동, 진술 분석제도 및 전문가 참여제도 연구개발과 시범운용계획 연구사업'에서 아동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었던 기준들을 추가하였다. 행동증상의 기준으로는 평가자로부터 관찰된 성폭력 피해 아동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사업에서 개발한 'CSAR-PSY(Child Sexual Abuse Report-Psychologist)'이 사용되었으며, 아동의 행동을 관찰한 부모님의 보고를 획득하기 위해 연구사업에서 개발한 CSAR-P(Child Sexual Abuse Report-Parent)와 심리검사(HTP, KFD) 결과도 기준으로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기준은 1점(매우 그렇지 않음)에서 5점(매우 그럴듯함)으로 채점되었고, 존재하는 기준들의 평균점수가 4점 이상에서 5점인 경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6개의 기준들에 의해 선별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 연구대상자는 24명이었다. 6개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의학적 증거

의학적 증거는 아동이 성폭력을 경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 피해 사건은 의학적 증거가 남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삽입이 없었던 성폭력 또는 성추행 사건인 경우 의학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 때문에 삽입이 있었던 성폭력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학적인 증거에 따른 분류가 유용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의학적인 증거는 Adams, Harper 그리고 Knudson(1992)이 제안한 아동의 생식기 주변이나 항문주변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을 구분해 놓은 분류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분류방식에서는 아동의 생식기, 항문주변에서 관찰 가능한 증상들을 정상아동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서부터 분명한 삽입/학대가 있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까지 5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의학적 범주1은 정상아동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그러므로 의학범주1의 증거가 있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를 의심할 수 없다. 의학 범주2는 불특정 증상으로 이는 성폭력 피해에 의해 야기될 수 있으나 다른 의학적인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특정 범주 증상 하나만 가지고 성폭력 피해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의학적 범주3은 학대가 의심스러운 증상들이 포함된 범주이며 이 범주에 속하는 증상들이 관찰될 경우에 학대의 가능성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Adams, 1992). 의학적 범주4는 학대/삽입을 암시하는 증거로 성폭력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의학 범주3이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이 외 다른 생식기 주변의 의심스러운 증상들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는 아동에게 성학대가 존재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마지막 의학 범주5는 학대/삽입이 명백한 증거이다. 이러한 범주의 증상이 존재할 때는 아동에게 학대 또는 삽입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Adams 등(1992)이 제시한 항문 생식기 주변의 증거는 아래의 표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dams 등(1992)이 제안한 항문 생식기 주변의 증상과 피해자의 생식기 주변 가해자의 음모 또는 정액, 그리고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는지 여부에 대해 '매우 그럴듯함'부터 '매우 그럴듯하지 않음'까지 5점 척도 상에 구분하였다. 의학 증거는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활용하였으며 진단서나 소견서가 없는 경우와 생식기 주변의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증거(예: 추행사건)들에 대해서는 판단 불가능함으로 구분하였다.

표 2. 항문 생식기 주변의 증거

의학 범주1(정상)
요도주변의 띠가 생김
음순 주름에서 홍반의 증가
질 내부에 융기가 생김
처녀막에 폴립
비만아동에게서 처녀막이 드러남
후부 처녀막 테두리가 넓어짐(1-2mm)
에스트로겐 수치가 변화함
6시 또는 12시 방향 항문 주변이 갈라짐
항문의 폴립 또는 중심선 주름이 두터워짐
의학 범주2(불특정 증상)
항문이 넓어져서 대변이 흘러나옴
소변검사 시 요도 조직에서 정맥출혈
질 어귀 또는 항문 주변 조직의 홍반
순음의 부착
질 어귀 또는 항문 주변의 혈기 증가
질에서 고름 또는 농
무릎가슴 자세에서 처녀막 가장 자리가 말림
항문이 찢어짐
항문주름이 평평해짐
항문주름이 두터워짐
처녀막 테두리가 좁아짐
의학 범주3(학대가 의문스러움)
처녀막이 확대됨
즉각적이고 강렬한 항문주변 정맥 충혈
최근에 생긴 적어도 15mm의 항문 벌어짐
삐뚤어지고 불규칙한 항문 구멍
아동에게서 음부 사마귀(매독)
질 어귀 또는 음순에 날카로운 찰과상, 열상, 또는 항문주변에 찢어진 상처
의학 범주4(학대/삽입이 의심됨)
두 개 이상의 의학 범주 3 또는 두 개 이상의 생식기 주변의 의문점 발견
처녀막의 결핍과 더불어 후부 음순 소대의 흉터 또는 새로운 상처
의학 범주5(삽입이 명백한 증거)
무릎가슴 자세에서 처녀막 조직이 없음
처녀막이 완전히 없어짐
후부 음순 소대가 찢어져 처녀막까지 확장
항문주변의 찢어진 상처가 괄약근까지 확장
5시와 7시 방향의 처녀막 조직이 없으며 후부 음순 소대가 찢어짐

출처 : Adams, Harper & Knudson, (1992).

표 3. 의학적 정보 평가 기준

범위	점수	내용
매우 그럴듯함	5점	의학 범주5(삽입이 명백한 증거) 생식기 주변 피의자의 정액 또는 음모 발견
꽤 그럴듯함	4점	의학 범주4(성학대 혹은 삽입을 암시하는 증거)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의학적 증거가 존재
의심스러움	3점	의학 범주3(성학대가 의심스러운 증거)
꽤 그럴듯하지 않음	2점	의학 범주2(불특정 증상)
매우 그럴듯하지 않음	1점	의학 범주1(정상)
판단 불가능함	-	관련된 정보가 없는 경우 의학적 증거가 없는 사건

② 용의자 자백

피의자 자백은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자술서 또는 진술서와 법정에서의 자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피의자의 진술은 완전 자백과 부분 자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완전 자백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부분 자백은 자신의 행동의 일부는 시인하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자백의 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수사 단계와 법원에서 모두 자백한 경우 일관적인 자백, 수사 단계 또는 법원 둘 중 한 곳에서만 자백이 있던 경우는 비일관적 자백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는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경찰 또는 검찰 둘 중 한 곳에서 자백이 있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자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 4. 용의자 자백 평가 기준

범위	점수	내용
매우 그럴듯함	5점	진술서와 법정에서 모두 전면 자백
꽤 그럴듯함	4점	수사단계에서 부분 자백 후 법정에서 전면 자백
의문스러움	3점	진술서 그리고 법정에서의 부분적인 자백 수사단계 전면 자백 후 법정 부분 자백
꽤 그럴듯하지 않음	2점	수사 단계에서 전면자백 후 법정에서 부인
매우 그럴듯하지 않음	1점	경찰 단계에서 부분 자백 후 법정에서 부인
판단 불가능함	-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모두 부인

③ 목격자 증거

목격자 진술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목격자 진술조서를 참고하여 목격자의 존재와 목격자와 피해자 · 피의자와의 관계, 목격된 정보의 정확성, 목격자의 동기, 목격자 증언과 피해자 증언과의 일관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목격자가 피해자 혹은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판단 불가능'으로 고려하였다. 이해관계는 명확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때만 판단 불가능으로 평가하여 평가에서 제외 되었다.

표 5. 목격자 증거 평가 기준

범위	점수	내용
매우 그럴듯함	5점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 정보가 피해자 증언과 일치하며 성폭력 행위와 직접 관련된 목격자에 의한 진술
꽤 그럴듯함	4점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에 의한 정보가 성폭력을 암시하며 피해자 증언과 일관적인 진술
의문스러움	3점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에 의한 정보가 증언과 일치하며 성폭력 행위와 관련성이 적은 정보
꽤 그럴듯하지 않음	2점	성폭력 행위와 직접 관련된 진술이지만 피해자/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진술
매우 그럴듯하지 않음	1점	피해자의 진술과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
판단 불가능함	-	목격자 증거가 없음 피해자/가해자와 이해관계 존재하는 목격자 진술

④ 물리적/신체적 증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성폭력의 물리적 증거들 역시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물건, 사건 발생 장소에서의 혈흔 또는 정액, 피해 아동의 옷에서 검출된 혈흔 또는 정액 등이 물리적 증거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물리적 증거는 증거의 개수와 종류, 출처의 신뢰성, 사건과의 관련성, 피해자 진술과의 일관성 등의 차원에서 평가되었다. 출처의 신뢰성은 증거의 출처가 신뢰로운지에 대한 평가로서 경찰이나 수사 단계에서 발견된 증거에 대해서는 신뢰롭다고 볼 수 있으나 사건 처리 중간에 증거가 없어 불리하게 된 피해자에 의해 갑자기 제시된 증거 등은 그 출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사건과의 관련성은 증거가 성폭력 피해

사건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표 6. 물리적/신체적 증거 평가 기준

범위	점수	내용
매우 그럴듯함	5점	2개 이상의 신뢰롭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 존재 피해자의 옷이나 신체에서 피의자의 정액 발견
꽤 그럴듯함	4점	1개의 신뢰롭고 사건과 관련된 물리적 증거 존재
의문스러움	3점	신뢰롭지 못하거나, 사건과 관련성이 적은 증거
꽤 그럴듯하지 않음	2점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적 일관적이지 않은 증거
매우 그럴듯하지 않음	1점	피해자의 진술과 일관적이지 않은 증거
판단 불가능함	-	물리적/신체적 증거 부재

⑤ 성폭력 피해 아동의 행동증상-전문가보고

행동증상이란 실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가 아동의 진술녹화를 관찰하고 진술녹화 후 면담을 통해 행동특징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관찰된 행동특징은 채규만 연구팀이 사업기간 동안 관련 서적 및 논문, 성폭력 피해 아동 실무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발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행동증상-전문가보고(Child- Sexual Abuse Report - Psychologist : CSAR-PSY)'로 평가되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행동증상-전문가보고'는 억압/회피 10문항, 해리 4문항, 불안 13문항, 우울 7문항, 분노/공격성 7문항, 퇴행 3문항, 성행동 5문항으로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행동증상은 기본적으로 빈도와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은 아동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

문에 빈도보다는 강도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 또한 관찰된 행동증상이 성폭력 피해 사건에 의해 발생했다고 설명하는 것을 저해하는 다른 외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비록 진술녹화 과정과 진술녹화 후 면담과정에서 행동증상들이 관찰되었더라도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 가정 내 폭력, 최근 신체학대 경험, 부모님 또는 선생님에 의한 심한 체벌, 또래관계 문제 등 스트레스를 주는 다른 외부 요인이 있다면, 관찰된 행동증상이 성폭력 피해 사건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행동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증상이 나타났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증상과 외부요인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 7. 행동증상 평가 기준

범위	점수	내용
매우 그럴듯함	5점	2개 이상의 행동증상이 강한 정도로 존재하고 행동증상과 관련된 다른 요인이 부재
꽤 그럴듯함	4점	1개의 행동증상이 강한 정도로 존재하고 행동증상과 관련된 다른 요인이 부재
의문스러움	3점	2개 이상의 행동증상이 약한 정도로 존재하고 행동증상과 관련된 다른 요인이 부재
꽤 그럴듯하지 않음	2점	1개 이상의 행동증상이 존재하고(빈도와 정도 관계없이) 행동증상과 관련이 있는 다른 요인이 존재
매우 그럴듯하지 않음	1점	1개의 행동증상이 약한 정도로 존재하고 행동증상과 관련이 있는 다른 요인이 존재
판단불가능	-점	나타나는 행동증상이 없음 또는 행동증상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

⑥ 성폭력 피해 아동의 부모보고와 심리검사결과(HTP, KFD)

CSAR-P(Child Sexual Abuse Report - Parent)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의 주 양육자가 성폭력 피해 이후 관찰된 아동의 행동 양상을 체크하도록 하여, 평가자가 아동의 심리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용했다. 이는 연구사업 기간 동안 채규만 연구팀이 관련 서적 및 논문을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아동이 나타낼 수 있는 심리/행동 양상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분노, 퇴행, 해리, 성행동 등으로 구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8문항, 우울 8문항, 불안 9 문항, 분노 4문항, 퇴행 2문항, 해리 4문항, 성행동 14문항, 기타 특이 사항 1문항으로 총 60문항으로 구성하여 심리/행동 양상을 측정했다.

또한 연구사업 기간 동안 평가자들은 아동이 진술녹화를 한 후 개인면담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가자들은 좀 더 세밀하게 아동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자 면담하는 과정에서 HTP와 KFD의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아동의 부모(주양육자)는 성폭력 피해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아동의 행동증상을 과대하게 지각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심리검사 결과는 평가자의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객관적인 점수로 변환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두 가지의 결과를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집단분류 기준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가 두 가지의 결과와 외부요인여부를 종합하여 1점-5점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하나의 집단분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외부요인은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입증이 부모(주양육자) 또는 아동에게 어떠한 이득(양육권, 경제적 이득 등)을 주는가로 평가되었다.

표 8. 성폭력 피해 아동의 부모보고와 심리검사 평가 기준

범위	점수	내용
매우 그럴듯함	5점	부모보고 결과, 심리검사 결과, 외부요인 존재 여부를 바탕으로 평가자가 채점
꽤 그럴듯함	4점	부모보고 결과, 심리검사 결과, 외부요인 존재 여부를 바탕으로 평가자가 채점
의문스러움	3점	부모보고 결과, 심리검사 결과, 외부요인 존재 여부를 바탕으로 평가자가 채점
꽤 그럴듯하지 않음	2점	부모보고 결과, 심리검사 결과, 외부요인 존재 여부를 바탕으로 평가자가 채점
매우 그럴듯하지 않음	1점	부모보고 결과, 심리검사 결과, 외부요인 존재 여부를 바탕으로 평가자가 채점
판단 불가능	-점	부모보고 결과, 심리검사 결과, 외부요인 존재 여부를 바탕으로 평가자가 채점

2)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

본 연구에서는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만 13세 미만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총 17명의 아동이 모집되었으나, 한 아동은 5년 전 성폭력 피해(성추행) 경험이 있었고, 한 아동은 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로 진단 받아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 연구대상자는 15명이었다.

2. 연구절차

1)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에 대한 연구절차

본 연구자를 포함한 성신여대 채규만 연구팀은 경찰청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 사이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원스톱 지원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녹화 과정을 볼 수 있었으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연구자를 포함한 성신여대 채규만 연구팀은 진술녹화 과정을 관찰하고 녹화된 영상자료를 반복하여 보면서 CBCA를 채점하였고, 면담과정을 통해서 행동관찰, 부모보고, 심리검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의학적 증거, 용의자 자백, 목격자 증거, 물리적/신체적 증거는 해당 원스톱 지원센터의 경찰관과 경찰청의 도움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2)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연구절차

모집된 아동은 실험자 1에 의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해당하는 간단한 정보를 포함하는 성폭력 피해 사례를 제시받았다. 또한 아동은 실험자 1로부터 '연극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과 같이 경찰관(실험자 2)의 질문에 대답하면 되며, 만약 사례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을 경찰관이 질문한다면 자유롭게 상상하여 대답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실험자는 2는 실제 현장에서 성폭력 전담 경찰관이 아동에게 하는 기본적 질문을 토대로 만들어진 질문들을 하게 되고, 아동의 진술과정은 녹화되었다. 진술이 끝난 후에 실험자 1은 아동에게 과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직 ·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직·간

접적인 경험이 있는 아동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가 종료된 후에 녹화된 아동의 진술은 CBCA로 채점되었다.

3. 진술분석

1) 분석도구

CBCA를 위해서 Steller와 Koehnken(1988)이 제시한 19개의 준거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연구자가 몇 개의 준거를 선발하거나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Steller와 Koehnken(1988)가 제시한 준거 모두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19번 (범죄 특징 세부묘사)을 제외하였다. '범죄 특징 세부 묘사'는 아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형적인 범죄에서 나타나는 방식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는 준거(Steller와 Koehnken, 1988)로, 현재 어떠한 사건이 전형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장 및 실험실 연구는 19번 준거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며, 19번 준거가 포함된 연구에서도 확실한 진술과 거짓 진술을 구별하지 못하였다(Vrij, 200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9번 준거를 제외한 18개의 CBCA 준거를 사용하였다.

2) 평가자 및 평가자 훈련

CBCA 진술 분석은 2명의 임상심리학 대학원생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들은 임상심리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위한 이론적인 교육을 받았고 실제 사건을 통한 연습을 하였다. 평가자들은 단독적인 평가에 앞서 실제 사건을 가지고 분석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결과에 대

한 개별적인 지도를 받았다.

평가자 간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2명의 평가자가 10개의 사건을 분석하였을 때 평가자 간 Pearson 상관계수와 Kappa 계수를 보았다. 평가자 1과 평가자 2 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91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Kappa 계수는 .801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Kappa 계수는 .60 이상 되면 신뢰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고려할 때(Shrock & Coscareil, 1989; 탁진국, 1996 재인용), 평가자 간 신뢰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인다.

평가자 간 신뢰도를 위해 분석된 10개의 사건을 제외한 29건에 대해, 평가자 1은 19개를 분석하였고, 평가자 2는 10개를 분석하였다.

표 9. 채점자 간 상관계수

	채점자 1	채점자 2
채점자 1	1	.913***
채점자 2	.913***	1

*** *p<.001*

표 10. Kappa 계수

	값	점근 표준오차(a)	근사 T 값(b)	근사 유의확률
일치 측도 카파	0.801	0.038	14.986	.000
유효 케이스 수	180			

a 영가설을 가정하지 않음.

b 영가설을 가정하는 점근 표준오차 사용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①번을 제외하고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① CBCA는 훈련된 평가자들이 진술녹화 영상자료에서 준거가 부재할 경우 0점, 존재할 경우 1점, 강하게 존재할 경우 2점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강하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평가는 빈도와 정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② 채점자간 신뢰도는 상관계수와 Kappa 계수를 통해 알아보았다.

③ 본 연구의 대상자 특징은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④ 집단에 따른 CBCA 총점에서의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해 변량분석(ANOVA)을 실시했다.

⑤ CBCA의 18개의 준거들 중에서 어떤 준거가 두 집단을 유의미하게 구분해주는지를 보기위해 변량분석(ANOVA)을 실시했다.

Ⅴ. 연구 결과

1.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연구대상 아동의 특징

1) 성별 및 연령

24명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성별은 여자 아동이 23명(95.8%), 남자 아동이 1명(4.2%)으로 대부분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은 여자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아동의 연령은 평균 9.79세(SD=2.83)로 나타났다.

표 11.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연령

연령	빈도(N)	퍼센트(%)
3	2	8.3
6	1	4.2
7	2	8.3
9	3	12.5
10	3	12.5
11	3	12.5
12	10	41.7
합계	24	100

표 12.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성별

성별	빈도(N)	퍼센트(%)
남자	1	4.2
여자	23	95.8
합계	24	100

2) 피해 횟수

피해 횟수는 1회가 14명(58.3%)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횟수가 2-4회인 경우는 6명(25%), 5회 이상인 경우는 3명(12.5%)이었다. 연구대상자 24명 중 1명은 피해횟수를 셀 수 없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피해가 반복적이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친족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다.

표 13. 피해 횟수

피해 횟수	빈도(N)	퍼센트(%)
1회	14	58.3
2-4회	6	25
5회이상	3	12.5
알 수 없음	1	4.2
합계	24	100

3) 피해 유형

본 연구에서는 성적 키스, 애무, 구강삽입, 손가락 삽입, 항문 삽입, 성기 삽입, 드라이 섹스(성기 문지르기) 등의 피해 유형을 코딩하였으며, 경험한 피해 유형은 중복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성적 키스는 가해자가 아동에게 성인들 간에 허용되는 방식으로 키스를 하는 행위이며, 애무는 가해자가 아동의 가슴, 성기, 허벅지 혹은 엉덩이를 만지거나 또는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 아동이 성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위는 성인이 아동으로 하여금 성인의 성기를 자위하도록 시키는 행위이며, 드라이 섹스는 가

해자가 자신의 음경을 아동의 성기, 엉덩이 혹은 허벅지에 문지르는 행위이다(Sgoi, Blick & Porter 1982; 강은영 재인용, 2003). 그 결과 총 57개의 성폭력 피해 유형이 집계되었으며, 이 중 애무가 11건(19.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항문 삽입이 2건(3.5%)으로 가장 적은 수의 빈도를 나타냈다.

표 14. 성피해 유형(중복코딩)

성피해 유형	응답	
	N	퍼센트(%)
성적키스	8	14.0
애무	10	19.3
구강삽입	6	10.5
손가락삽입	7	12.3
항문삽입	2	3.5
성기삽입	12	21.1
성기 문지르기	10	17.5
기타	1	1.7
합계	57	100

4) 피해 장소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가 경험한 성폭력 피해 장소 모두를 코딩하였다. 이 중 8건(26.7%)이 동네 주변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해자의 주거지가 5건(16.7%)으로 그 다음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장소에는 이혼한 어머니의 집이 있었다.

표 15. 피해 장소(중복코딩)

피해장소	응답	
	N	퍼센트(%)
피해자주거지	2	6.7
가해자주거지	5	16.7
양자의 공동주거지	2	6.7
뒷골목, 공터	8	26.7
야외의 한적한 곳	4	13.3
학교, 학원, 유치원 등	3	10.0
놀이터나 학교운동장	1	3.3
공중화장실, 상가화장실	2	6.7
차량내	1	3.3
여관, 호텔 등	1	3.3
기타	1	3.3
합계	30	100

2.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연구대상 아동의 특징

1) 성별 및 연령

15명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성별은 여자 아동이 12명(80%), 남자 아동이 3명(20%)으로 대부분의 아동은 여자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아동의 연령은 평균 9.60세(표준편차=1.64)로 나타났다.

표 16.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연령

연령	빈도(N)	퍼센트(%)
6	2	13.3
8	1	6.7
9	2	13.3
10	7	46.7
11	2	13.3
12	1	6.7
합계	15	100

표 17.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성별

성별	빈도(N)	퍼센트(%)
남자	3	20
여자	12	80
합계	15	100

3. 성폭력 피해 가해자의 특징

1) 가해자의 유형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해자의 유형으로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 11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는 사람이 4명(16%)으로 그 다음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이혼한 어머니의 남자친구와 인터넷 상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친부모, 친인척, 동네사람, 선생님, 애인 등은 전부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아동 성폭력 피해 사건이 주로 낯선 사람에게서 일어난다는 사회적 통념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8. 가해자 유형(중복코딩)

가해자 유형	응답	
	N	퍼센트(%)
모르는 사람	11	44
아는 사람	4	16
친부모	1	4
친인척	2	8
동네사람	2	8
선생님	2	8
애인	1	4
기타	2	8
합계	25	100

2) 가해자의 전과 횟수

전체 가해자 24명 중에서 5명(20.8%)이 성관련 범죄에 대한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6명(25%)이 성관련 외의 범죄에 대한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도 비슷한 수치이다.

표 19. 성관련 범죄 전과횟수

전과	빈도(N)	퍼센트(%)
있다	5	20.8
없다	19	79.2
합계	24	100

표 20. 성관련 범죄 외 전과횟수

전과	빈도(N)	퍼센트(%)
있다	6	25
없다	18	75
합계	24	100

4. 성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따른 CBCA 점수

1) CBCA 총점

성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따른 CBCA 총점을 분석한 결과, '경험집단'의 평균은 15.13점(표준편차 3.9), '무경험 집단'의 평균은 7점(표준편차 2.03)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F(1, 37)=55.18$,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진술 이외의 6개의 기준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평가된 아동 집단의 진술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 집단의 진술보다 CBCA 총점이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가설 1을 지지해 주었다.

표 21. 성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따른 CBCA 총점 평균

집단	N	Mean	(Std.)	F
경험 집단	24	15.13	3.9	55.18***
무경험 집단	15	7	2.03	
전체	39	12	5.18	

*** *p<.001*

2) 개별 CBCA 준거 점수

성폭력 피해 경험의 유무에 따른 집단을 유의미하게 구별해주는 준거를 알아보기 위해 준거별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준거의 집단 간 평균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13개의 준거에서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개의 준거는 다음과 같다: 1번, 2번, 4번, 5번, 6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번(논리적 일관성)은 경험 집단(M=1.79점, SD=.42)이 무경험 집단(M=1.07, SD=.46)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37)=26.049, P<.001). 2번(체계적이지 않은 표현)은 경험 집단(M=0.63점, SD=.77)이 무경험 집단(M=0.00, SD=.00)보다 CBCA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37)=9.792, P<.01). 4번(문맥상 깊이)은 경험 집단(M=1.67점, SD=.64)이 무경험 집단(M=0.93, SD=.46)보다 CBCA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37)=14.973, P<.001). 5번(상호작용 묘사)은 경험 집단(M=1.54점, SD=.66)이 무경험 집단(M=0.80, SD=.68)보다 CBCA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37)=11.485, P<.01). 6번(대화의 인용)은 경험 집단(M=1.21점, SD=.78)이 무경험 집단(M=0.60, SD=.74)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37)=5.863, P<.05). 8번(독특한 세부내용)은 경험 집단(M=1.00점, SD=.83)이 무경험 집단(M=0.27, SD=.46)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37)=9.701, P<.01). 9번(부가적인 세부내용)은 경험 집단(M=1.42점, SD=.65)이 무경험 집단(M=0.27, SD=.46) 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37)=35.38, P<.001). 10번(이해하지 못했지만 정확하게 진술한 세부내용)은 경험 집단(M=0.33점, SD=.48)이 무경험 집단(M=0.00, SD=.00)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37)=7.115, P<.05). 11번(간접적인 관련 요소)은 경험 집단(M=0.67

점, SD=.70)이 무경험 집단(M=0.13, SD=.35)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37)=7.435, P<.05). 12번(주관적 심리상태)은 경험 집단(M=1.33점, SD=.64)이 무경험 집단(M=0.93, SD=.26)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37)=5.323, P<.05). 13번(가해자 정신상태에 대한 진술)은 경험 집단(M=0.42점, SD=.58)이 무경험 집단(M=0.07, SD=.26)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37)=4.772, P<.05). 14번(자발적인 수정)은 경험 집단(M=0.25점, SD=.44)이 무경험 집단(M=0.00, SD=.00)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37)=4.774, P<.05). 15번(기억부족 시인)은 경험 집단(M=0.58점, SD=.78)이 무경험 집단(M=0.00, SD=.00)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37)=8.401, P<.01). 이러한 결과들은 가설 2를 지지해 준다.

표 22. 집단 간 개별 CBCA 준거 점수

CBCA 준거	집 단		F
	경험집단	무경험집단	
1. 논리적 일관성	1.79	1.07	26.049***
2. 구조화되지 않은 제시	0.63	0.00	9.792**
3. 세부묘사의 양	1.87	1.67	1.933
4. 맥락상의 깊이	1.67	0.93	14.973***
5. 상호작용 기술	1.54	0.80	11.485**
6. 이야기의 재현	1.21	0.60	5.863*
7. 예기치 않은 일 발생	0.42	0.07	3.886
8. 독특한 세부묘사	1.00	0.27	9.701**
9. 부가적인 세부묘사	1.42	0.27	35.380***
10. 이해하지 못한 세부묘사	0.33	0.00	7.115*
11. 외적 연합	0.67	0.13	7.435*
12. 주관적 정신 상태	1.33	0.93	5.323*
13. 가해자 정신 상태 귀인	0.42	0.07	4.772*
14. 자발적인 수정	0.25	0.00	4.744*
15. 기억의 부족 시인	0.58	0.00	8.401**
16. 자기 진술 의심	0.00	0.00	.
17. 자기 비난	0.13	0.00	2.033
18. 가해자 용서	0.17	0.10	1.779

** p<.05, ** p<.01, *** p<.001*

5. 기타 분석

본 연구에서는 CBCA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CBCA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의 존재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경험집단과 무경험 집단)는 CBCA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연령을 살펴봤고,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집단의 연구대상자는 CBCA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연령, 사건유형, 피해횟수, 진술녹화시점을 추가적으로 살펴봤다.

1) 연령과 CBCA 총점 간의 관계

상관분석 결과, 모든 연구대상자의 CBCA 총점과 연령은 상관이 있었다. 즉,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CBCA 총점은 증가하였다(r=.463, P<.01).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표 23. 연령과 CBCA 총점 간의 관계

	CBCA 총점	연 령
CBCA 총점	1	
연 령	.463**	1

*** p<.01*

2) 성폭력 피해 사건 변인과 CBCA 총점 간의 관계

상관분석 결과,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연구대상자의 CBCA 총점과 연령, 사건유형, 진술녹화시점은 상관이 있었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CBCA

점수가 증가하였고(r=.795, P<.01), 성폭력 피해 사건이 강간인 경우 CBCA 점수가 증가하였으며(r=.418, P<.05), 진술녹화시점이 성폭력 피해 사건 발생으로부터 가까울수록 CBCA 점수가 증가하였다(r=-.400, P<.05). 사건유형과 CBCA 총점 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은 국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24. 성폭력 피해 사건 변인과 CBCA 총점 간의 관계

	CBCA 총점	연령	사건유형	피해횟수	진술녹화 시기
CBCA 총점	1				
연 령	.795**	1			
사건유형	.418*	.400	1		
피해횟수	-.239	-.386	-.082	1	
진술녹화시기	-.400*	-.395**	-.073	.666*	1

**p<.05 **p<.05*

사건유형: 1=추행, 2=강간

진술녹화시기: 1=당일, 2=일주일 이내, 3=한 달 이내, 4=장기지연

3) 성폭력 피해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연령

부가적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 집단의 아동과 성폭력 피해 무경험 집단의 아동의 연령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만약 연령이 집단 간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집단 간 CBCA 점수가 성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령에 의한 것이라는 대안적인 설명이 가능해진다.

집단 간 연령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 연령을 종속변인으로 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집단의 경우 아동 나이의 평균은 9.79세(SD=2.83)이었고,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아동 나이의 평균은 9.60세(SD=1.64)로 집단 간 유의미한 연령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CBCA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집단 간 평균 연령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검증한 집단 간 CBCA 점수의 차이는 연령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따라 나누어진 집단 간 진술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5. 성폭력 피해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연령분석

	N	Mean	(Std.)	F	Sig
경험 집단	24	9.79	(2.82)	0.057	.813
무경험 집단	15	9.60	(1.64)		
합계	27	9.72	(2.42)		

Ⅵ. 논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CBCA를 타당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24명의 아동과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15명의 아동이 모집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진술은 진술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영상자료를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는 집단의 구분에 따라 CBCA 총점과 개별 CBCA 준거 점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사실에 대한 진술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허위(상상) 진술보다 CBCA총점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에서도 CBCA가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CBCA의 개별 준거 중 1번(논리적 일관성), 2번(체계적이지 않은 표현), 4번(문맥상 깊이), 5번(상호작용 묘사), 6번(대화의 인용), 8번(독특한 세부내용), 9번(부가적인 세부내용), 10번(이해하지 못했지만 정확하게 진술한 세부내용), 11번(간접적인 관련 요소), 12번(주관적 심리상태), 13번(가해자 정신 상태에 대한 진술), 14번(자발적인 수정), 15번(기억부족 시인)에서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를 지지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2개의 CBCA 연구들을 종합한 외국의 선행연구(Vrij, 2004)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대부분의 준거들은 본 연구에서도 두 집단을 유의미하게 구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번(체계적이지 않은 표현)은

64%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포함한 국내 연구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이 사건에 대해 자유롭게 진술하게 하기보다는 조사자의 구조화된 질문에 대답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구조화되지 않은 진술 특성이 나타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번(이야기의 재현) 준거는 외국의 선행연구와 달리 국내의 연구에서 지지받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를 통해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선행연구가 피해자 진술 조사서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원진술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영상자료를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모든 연구대상자(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에서 아동의 연령은 CBCA 점수와 상관이 있었고,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집단의 연구대상자에서 사건유형과 진술녹화시점은 CBCA 점수와 상관이 있었다. 아동의 연령이 CBCA 점수와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선행연구(Anson, 1993; Buck, 2002)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의 연령이 CBCA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동의 인지 기능은 연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달하며, CBCA는 아동의 인지적인 능력과 언어적인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Davies, 1994). 그러나 어린 아동이 성인이나 그 보다 더 나이든 아동에 비해 CBCA 점수가 더 낮았지만 어린 아동이라 할지라도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진실하게 진술한 집단이 허위 집단보다 CBCA 점수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Vrij, 2002). 이는 CBCA가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에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CBCA 점수와 연령 사이에 상관이 있지만 두 집단 간 연령이 유의미하게 차이나지 않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도 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건유형과 진술녹화시점이 CBCA 점수와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앞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을 실시하고 분석할 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의 CBCA 활용 가능성을 더욱 지지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외국에서는 CBCA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연구가 미비하였다. 본 연구는 CBCA를 타당화하기 위한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외 선행연구와 전반적으로 일치되게 나왔다. 이러한 일치된 결과는 국내에서의 CBCA 활용 가능성을 더욱 지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 아동의 원진술을 그대로 담고 있는 영상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모두 아동의 진술을 녹취한 진술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진술조서는 작성자의 언어로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므로 언어표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진술 전체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축소 및 생략 등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아동의 원진술에 대한 영상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현장연구와 실험연구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CBCA 타당화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외국에서는 CBCA에 대한 현장연구와 실험연구가 매우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에 반해, 국내에서는 현장연구만이 연구되어왔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새로운 연구 방법을 통해 다각적으로 CBCA 타당화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연구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강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지식을 갖춘 평가자들이 성폭력 피해 아동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심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을 관찰한 부모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행동증상, 부모보고, 심리검사 결과는 선별 기준을 강화할 수 있었다. 나아가 오직 언어적인 표현에 대해서만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CBCA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증거, 용의자 자백, 목격자 진술, 물리적 증거, 전문가에 의한 행동관찰 및 심리검사, 부모보고, CBCA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수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이 24명이고,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이 15명으로 그 수가 적었다. 이렇게 작은 수의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전체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연구대상자를 포함한 추후 연구를 통해서 일반화 가능성을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일어나지 않은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 허위(상상)로 진술하는 아동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은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는 아동은 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경찰관이나 전문가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지 않은 성폭력 피해 사건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과 실험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허위(상상)로 진술한 것에는 거짓에 대한 위험의 크기 등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허위진술 하는 아동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CBCA 점수에 연령, 사건유형, 진술녹화시점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CA 점수와 연령 사이에 상관이 존재하므로, 단일 CBCA cut off 점수로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CBCA 점수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연령별 규준이 확립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CBCA 점수와 사건유형, 진술녹화시점 사이에 상관이 존재하므로, 사건유형과 진술녹화 시점에 따라 CBCA 점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은영(2003).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종선(2006). 아동진술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4-6, 59, 111-133.

서보학(200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위헌성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 22호, 290.

송윤정(2006).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고찰.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심영희(1998). 위험사회의 성폭력. 나남출판.

이미선(2004).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에 대한 준거기반 내용분석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8-24, 35-58.

안명옥(2005), 안명옥의원실, 유아성폭력 실태와 정책제안.

전우관(2003), 아동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15-18.

조은경(2004).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36, 41-55.

탁진국 (1996). 심리검사 -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학지사.

2. 외국문헌

Adams, J. A., Harper K., & Knudson S. (1992). Proposed System for the Classification of Anogentital finding in children with Suspected. Sexual Abuse *Adolescent and Pediatric Gynecolgy. 5,* 73-75.

Anson, J. A., Golding, S. L., & Cully, K. J. (1993).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s: Reliability of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Law and human Behavior, 17,* 331-341.

Boychuk T.(1991). *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of children's statements about sexual abuse: a field-based Validation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Tempe, AZ.

Bull, R. (1996). Good practice from video recorded interviews with child Witnesses for use in criminal proceeding. In G. Davies, S. Lloyd-Bostock, M McmMurran, & C. Wilson (Eds), *Psychology, law and criminal justice. Berlin,* Germany: de Gruyter.

Ceci, S. J., & Bruck, M. (1995). *Jeopardy in the courtroom.*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raig, R. A., Scheibe, R., Raskin, D. C., Kircher, J. C., & Dodd, D. H.,(1999). Interviewer questions and content analysis of children's statements of sexual abus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3, 77-85.

Davies, G. M. (1994). Children's testimony: *Research findings and police implications. Psychology, Crime & Low*, 1, 175-180.

Esplin, P. W., Boychuk T., & Raskin D. c.(1988). *A Field validity study of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of children's statements in sexual abuse case.* Paper presented at the NATO Advanced Study Institute on credibility assessment in Maaratea, Italy, June 1988.

Fivush, R., (1998). children's recollection of traumatic and nontraumatic events,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vol. 10, No. 4.

Goldstein, S. L., (1999).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 practical

guide to assessment, investigation, and intervention, New York: elsevier.

Horowitz, S. W., Lamb, M. E., Esplin, P. W., Boychuk, T. D., Lavery, R. L., & Krispin. O. (1994). Establishing ground truth in studies of child sexual abuse. *Expert Evidence, 4(2),* 42-51.

Lamb, M, E., Sternberf K. J., Esplin P. W., Jershkowitz I., Orbach Y., & Hovav M.(1997). Criterion-based content analysis: a field validation study. *Child Abuse and Neglect,* 21, 255-264.

Parker, A. D., & Brown, J. (2000). Detection of deception: Statement validity analysis as a mean of determining truthfulness or falsity of rape allegation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5,* 237-259.

Raskin, D. C., Esplin. P. W. (1991).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interview procedures and content analysis of children's statements of sexual abuse. *Behavior Assessment, 13,* 256-291.

Ruby, C. S., & Brigham, J. C. (1998). Can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distinguish between true and false statement of African-American speakers? *Law and Human Behavior 22,* 4, 369-38.

Steller, M (1989). *The development of statement reality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NATO Advanced Study Institute on credibility assessment in Maaratea, Italy, June 1988.

Steller, M., Koehnken G. (1988).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In D.C. Rakin (Ed.), *Psychological methods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evidence.* New York, NJ: Springer-Verlag.

Undeutsch, U. (1988). *The development of statement reality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NATO Advanced Study Institute on credibility assessment in Maaratea, Italy, June 1988.

Vrij, A. (2000). Detecting lies and deceit. John Witey & sons. LTD. 113-153.

Vrij, A.(2004).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A Qualitative Review of the First 37 Studie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Vrij, Akehurst, Soukara, & Bull, R. (2002). Will the truth come out? The effect of deception, age, status, coaching, and social skill on CBCA score. *Law and human Behavior, 26, 261-283.*

Wells G. L., Loftus E. F.,(1991). Commentary: Is this child fabicating reactions to a new assessment technique. *The suggestibility of children's recollection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0-76.

3. 인터넷 홈페이지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녹화에 관한 사이버 경찰청의 자료
http://www.police.go.kr/letter/20031016/text1.htm)

ABSTRACT

Empirical Validation Study of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for Credibility Assessment of Child Sexual Abuse Statement by using Video Recording Data.

Eun-young Ko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CBCA) is one of the most popular statement analysis methods to asses for the credibility assesment for the sexually abused victims. CBCA consists of 18 content criteria. Each criterion is an indicator of truthfulness of a statement and is more often present in truthful statements rather than in fabricated on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pplicability of CBCA for video recording of children's interview regarding their sexual abuse experiences.

It was hypothesized that CBCA scores for the sexually abused children's statement about their sexual abuse would be higher than that of children's statements that have not experienced sexual abuse. The subjects under thirteen years old who experienced sexual abuse were 24 children and subject who have not experienced sexual abuse were 15 children. The twenty four children with sexual abuse were screened and positively identified as sexual abuse victims by the other six sexual abuse indicators such as the medical evidence, confession of suspects,

eyewitness, physical/material evidence, behavior symptoms and parent report/psychology test.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children who experienced sexual abuse receiv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CBCA scores than those of the children who have not experienced sexual abuse. In addition, 13 of 18 criteria of CBCA were able to significantly discriminate the sexually abused children's statements from the non-sexually abused children's statements about truthfulness of their testimon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nsistent with those of previous studies conducted. Finally, som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CBCA	0점	1점	2점
1. 논리의 일관성 (진술의 일관성과 통일성)			
2. 구조화되지 않은 제시 (진술이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산발하여 나타남)			
3. 세부묘사의 양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등의 상세한 묘사)			
4. 맥락상 깊이 (사건이 나타나는 맥락의 정보가 풍부하게 주어짐)			
5. 상호작용 기술 (가해자와 관련된 상호작용)			
6. 대화의 재현 (“ ”로 대화를 축어적으로 재현)			
7. 사건 동안 예기치 않은 일 발생 (사건 중 예기치 못한 중단 또는 어려움, 종료)			
8. 독특한 세부묘사 (사건, 물체, 가해자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			
9. 부가적인 세부묘사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사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묘사)			
10. 정확하게 보고된 이해하지 못한 세부묘사 (면담자는 이해되나 진술자는 이해하지 못함)			
11. 관련된 외적 연합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진술)			
12. 주관적 정신상태 묘사 (사건 당시 주관적인 인지, 정서 상태 평가)			
13. 가해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귀인 (가해자의 인지적, 정서 상태 추론)			
14. 자발적인 수정 (자신의 진술을 자연스럽게 수정)			
15. 기억의 부족 시인 (기억의 부족을 자연스럽게 시인. 단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것은 아님)			
16. 자기 진술에 관한 의심제기 (자신이 진술이 정확하지 않거나 믿지 못할 것에 대한 의심, 걱정)			
17. 자기 비난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혐의를 초래할 수 있는 묘사			
18 가해자의 용서 (범죄자의 행동을 해명하거나 합리화 하는 진술)			

성피해 아동 사건 조사표

성피해 아동 이름 : _____

A. 사건 관련

1. 죄명(중복체크가능)

____ 1) 미성년자 강간 ____ 2) 미성년자 추행
____ 3) 준강제 추행 ____ 4)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____ 5) (공공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____ 6) (친족에 의한 강간 등)
____ 7) 기타 (구체적으로)

※ 괄호안의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임.

2. 공범자 수 : 총 _____ 명.
3. 피해자 수 : 총 _____ 명.

4. 사건 처리 결과(최종)

____ 1) 사형 ____ 2) 무기징역 ____ 3) 유기징역
____ 4) 벌금형 ____ 5) 보호처분 ____ 6) 기소 유예
____ 7) 집행 유예 ____ 8) 무혐의 ____ 9) 공소권 없음
____ 10) 기타 (구체적으로)
____ 11) 사건 조사가 진행 중

B. 가해자

1. 성별

____ 1)남 ____ 2) 여

2. 범행 당시 연령 : 만_____세
3. 직업 : _____
4. 혼인 상태

____ 1) 미혼 ____ 2)기혼 동거 ____ 3)기혼 별거
____ 4) 이혼 ____ 5) 사별 ____ 6)동거(사실혼)
____ 7) 가출 ____ 8) 미상

5. 장애 및 중독 유무(중복체크 가능)

____ 1) 신체 장애 ____ 2) 정신 장애 ____ 3) 지체 장애

____ 4) 알코올 중독 ____ 5) 기타

6.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제외한 유죄 판결 받은 전과 횟수 : 총 _____ 회

7. 유죄 판결 받은 성폭력 관련 전과 횟수: 총 _____ 회

C. 피해자

1. 성별

____1) 남 ____2) 여

2. 연령 : 만_____세

3. 사건 발생 장소(동일가해자, 중복 체크 가능)

____1) 피해자의 주거

____2) 가해자의 주거

____3) 양자의 공동 주거

____4) 양자의 고동 영업, 근무지

____5) 피해자의 영업, 근무지(아르바이트 포함)

____6) 가해자의 영업, 근무지

____7) 뒷골목이나 공터(동네주변)

____8) 공원이나 야외의 한적한 곳

____9) 교육 시설(학교, 학원, 유치원 등)

____10) 놀이터, 학교 운동장

____11) 공중 화장실, 상가 화장실

____12) 차량 내

____13) 주차장

____14)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

____15) 기타 (구체적으로,)

6.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난 성폭력 피해 유형(중복 체크 가능)

____1) 성적 키스 ____2) 애무

____3) 자위 ____4) 구강 삽입

____5) 손가락 삽입 ____6) 항문삽입

____7) 성기삽입 ____8) 이물질 삽입

____9) 드라이 섹스(성기 문지르기) ____10) 기타(구체적으로,)

7. 가해자와의 관계

____1) 모르는 사람 ____2) 안면이 있는 사람
____3) 친부모 ____4) 계부/계모
____5) 형제 ____6) 이복 형제
____7) 친인척 ____8) 친구
____9) 선후배 ____10) 동네사람
____11) 선생님(학원/학교/교회) ____12) 종교 관련자
____13) 애인 ____14) 기타(구체적으로,)

D. 의학적 증거

1. 존재 여부

____ 1) 존재 ____ 2)부재

2. 의학적 증거 분류

분류 1.

____ 1) 요도주변의 띠가 생김
____ 2) 음순 주름에서 홍반의 증가
____ 3) 질내부의 융기가 생김
____ 4) 처녀막에 폴립(살버섯, tag)
____ 5) 비만 아동에게서 처녀막이 늘어남
____ 6) 후부 처녀막 테두리가 넓어짐(1-2mm)
____ 7) 에스트로겐 수치가 변화함
____ 8) 6시 또는 12시 방향 항문 주변이 갈라짐
____ 9) 항문의 폴립(살버섯, tag) 또는 중심선 주름이 두꺼워짐

분류 2.

____ 1) 질어귀 또는 항문 주변 조직의 홍반
____ 2) 순음이 부착
____ 3) 질어귀 또는 항문 주변의 혈기가 늘어남
____ 4) 질에서 고름 또는 농
____ 5) 무릎가슴자세에서 처녀막 가장자리가 말림
____ 6) 항문이 찢어짐
____ 7) 항문 주름이 평평해 짐
____ 8) 항문 주름이 두꺼워 짐

____ 9) 항문이 넓어져 대변이 흘러나옴
____ 10) 처녀막 테두리가 좁아짐
____ 11) 소변검사 시 요도 조직에서 정맥 출혈

분류 3.
____ 1) 처녀막 구멍이 확대됨
____ 2) 적어도 15mm의 즉각적 항문 벌어짐
____ 3) 즉각적이고 강렬한 항문 주변 정맥 충혈
____ 4) 삐뚤어지고 불규칙한 항문 구멍
____ 5) 전체와 비교해 뒤쪽 처녀막 테두리가 1mm 작을 때
____ 6) 아동에게 음부 사마귀(매독)
____ 7) 질어귀 또는 음순에 날카로운 찰과상이나 열상 또는 항문주변에 찢어진 상처

분류 4.
____ 1) 2개 이상의 '분류 3'의 발견이 있거나 2개 이상의 생식기 주변의 의문점 별견됨.
____ 2) 처녀막의 결핍과 더불어 후부 음순소대의 흉터 또는 새로운 상처

분류 5.
____ 1) 무릎가슴자세에서 처녀막 조직이 없음
____ 2) 처녀막이 완전히 없어짐
____ 3) 항문주변의 찢어진 상처가 괄약근까지 확장됨
____ 4) 처녀막의 가로로 찢어짐
____ 5) 후부 음순소대가 찢어져 처녀막까지 확장됨
____ 6) 5시와 7시 방향의 처녀막 조직이 사라짐과 더불어 후부 음순소대가 찢어짐

3. 성병, 정액, 음모, 임신(중복체크가능)
____ 1) 피해자에게서 피의자의 정액 발견
____ 2) 피해자에게서의 피의자의 음모 발견
____ 3) 피해자와 피의자가 동일한 성병에 감염
____ 4) 피해자의 임신

4. 피해자 진술에서 나타난 행위와 의학적 증거의 일관성
____ 1) 일관성이 높음 ____ 2) 비교적 일관적
____ 3) 별로 일관적이지 않음 ____ 4) 진술과 일치하지 않음

5. 음부 이외의 다른 신체부위의 상처 여부
____ 1) 존재 ____ 2) 부재
6. 상처 부위(중복체크가능)
____ 1) 얼굴 ____ 2) 머리 ____ 3) 목 ____ 4) 배
____ 5) 등 ____ 6) 팔, 손, 손목 ____ 7) 다리, 발 ____ 8) 기타
7. 음부 이외의 다른 신체부위 상처에 대한 피해자 진술과의 일관성
____ 1) 일관성 높음 ____ 2) 비교적 일관적
____ 3) 별로 일관적이지 않음 ____ 4) 진술과 일치하지 않음

E. 용의자 자백

1. 존재 여부
____ 1) 존재 ____ 2) 부재
2. 자백의 정도
____ 1) 전면 자백 ____ 2) 부분적 자백 ____ 3) 비 일관적인 자백
3. 자백의 근원
(1) 자필 서명된 피의자 신문조서
____ 1) 있음 ____ 2) 없음
(2) 법정에서 시인
____ 1) 있음 ____ 2) 없음

F. 목격자 증거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신뢰롭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격자 1인을 대상.

1. 존재 여부
____ 1) 존재 ____ 2) 부재
2. 목격자의 수 : _____ 명
3. 목격자와 피해자, 가해자와의 관계(중복체크가능)
____ 1) 피해자와 아는 사이(피해자의 _____)
____ 2) 가해자와 아는 사이(가해자의 _____)
____ 3) 양자 모두 모르는 사이
4. 목격자의 동기
____ 1) 존재함(경제적 이득 또는 손실, 양육권 등)
____ 2) 존재하지 않음

5. 목격된 정보와 사건과의 관련성

____ 1) 성폭력이 확실한 정보(예:성행위, 아동이 소리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목격 등)

____ 2) 성폭력을 암시하는 정도(예 : 사건 후 목격 등)

____ 3) 관련성이 적은 정보(예 : 단지 함께 지나가는 것을 목격 등)

6. 목격자 증언과 피해자 증언과의 일관성

____ 1) 일관성 높음 ____ 2) 비교적 일관적

____ 2) 별로 일관적이지 않음 ____ 4) 진술과 일치하지 않음

G. 물리적 증거

1. 물리적 증거 존재 여부

(예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물건, 사건발생 장소에서의 혈흔, 정액 등)

____ 1) 존재 ____ 2) 부재

2. 물리적 증거의 개수 : 총 _____ 개

3. 증거의 종류

※ 신뢰성 :출처의 신뢰성
관련성 : 사건과 관련성
일관성 : 피해자 진술과의 일관성

1) 증거1_____ 신뢰성 있음/없음 관련성 : 있음/없음. 일관성 : 있음/없음

2) 증거2_____ 신뢰성 있음/없음 관련성 : 있음/없음. 일관성 : 있음/없음

3) 증거3_____ 신뢰성 있음/없음 관련성 : 있음/없음. 일관성 : 있음/없음

4) 증거4_____ 신뢰성 있음/없음 관련성 : 있음/없음. 일관성 : 있음/없음

아동의 성폭력 피해 증상 리포트
CSAR-Psy(전문가용)

Repression 억압/회피				
1. 얼굴 표정을 억제한다.	0	1	2	3
2. 사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다.	0	1	2	3
3. 사건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면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거나 화제를 바꾸려고 시도한다. 즉,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대화를 피하려고 한다.	0	1	2	3
4. 부모님과 동석 시 성피해 진술을 더 회피하거나, 수치스러워 한다.	0	1	2	3
5. 사건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을 물어 봤을 때, 이를 피하려고 한다.	0	1	2	3
6. 무언가 숨기는 듯한 행동이나 말을 한다.	0	1	2	3
7.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상황에 대한 회상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피한다.	0	1	2	3
8. 성피해 사건에 관련된 대화를 나눌 때, 눈맞춤을 하지 않는다.	0	1	2	3
9. 성피해 사건에 관련된 대화를 나눌 때,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	0	1	2	3
10. 신체 인형의 사용을 거부한다.	0	1	2	3

Dissociation 해리				
11. 사건에 관한 매우 중요한 측면을 회상하지 못한다.	0	1	2	3
12. 자주 멍하게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변 환경에 대한 주의/인식 감소)	0	1	2	3
13. 감정 반응의 둔화 및 이탈 무반응.	0	1	2	3
14. 자기의 피해에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임.	0	1	2	3

Anxiety 불안				
15. 위축된 행동을 보인다.	0	1	2	3
16. 집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보인다.	0	1	2	3
17.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잘 놀란다.	0	1	2	3
18. 사건 발생 후, 악몽을 꾸거나 귀신에 대한 무서움이 커졌다고 보고한다.	0	1	2	3

19. 보호자와 떨어져 혼자 있게 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보호자에게 매달린다.	0	1	2	3
20. 일반적 질문과 달리,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서 신체적 긴장(두근거림, 땀 흘림, 근육 긴장 등)이 관찰된다.	0	1	2	3
21. 피의자(또는 남성)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다.	0	1	2	3
22. 안절부절 하거나 혼란스러운 행동이 관찰되었다.	0	1	2	3
23. 진술에 응하기보다 주변의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등 산만하다.	0	1	2	3
24. 사소한 것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0	1	2	3
25. 감정변화의 폭이 크다.	0	1	2	3
26.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이나, 사건 이외의 상황 설명 및 이해에서는 일관된 대화를 나누지만, 성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0	1	2	3
27. 불안정한 눈맞춤(eye-contact)을 보인다.	0	1	2	3

Depression 우울				
28. 걱정이나 슬퍼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0	1	2	3
29. 위축된 행동을 보인다.	0	1	2	3
30. 자신감 없는 행동을 보인다.	0	1	2	3
31. 성피해 사건에 관련된 대화를 나눌 때,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0	1	2	3
32.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진술에서 얼굴 찡그림/울음반응을 보인다.	0	1	2	3
33.성피해 사건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 괴로워한다.	0	1	2	3
34. 성피해 사건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 수치심, 부끄러움, 자기비하의 행동이나 말을 한다.	0	1	2	3

Anger 분노(공격성)				
35. 외부 및 타인을 향한 공격성을 보인다. (예 : 타인공격, 때림, 물건 던지기)	0	1	2	3
36. 자해 행동을 보인다. (예 : 자해)	0	1	2	3
37. 화가 나 보인다. (예 : 씩씩거림, 얼굴 빨개짐 등)	0	1	2	3
38.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행동이 관찰되었다.	0	1	2	3
39.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0	1	2	3
40.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0	1	2	3
41. 피의자로 동일시된 신체 인형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예 : 인형 때림, 인형 꼬집기, 인형 던지기 등)	0	1	2	3

Regression 퇴행				
42.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행동양상을 보인다.	0	1	2	3
43. 발달 수준보다 다소 저하된 언어양상을 보인다.	0	1	2	3
44. 어린아이처럼 말한다.	0	1	2	3

Sexual Behavior 성행동				
45. 자위행동을 보이거나 성기부위를 만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0	1	2	3
46. 유혹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과도한 스킨쉽을 시도한다.	0	1	2	3
47. 신체 인형이나, 검사에서 성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0	1	2	3
48. 발달 수준과 맞지 않는 성적 용어 사용이나 성 관련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0	1	2	3
49. 성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보인다.	0	1	2	3

아동 성폭력 피해 증상 리포트
CSAR-P(부모용)

0=없음, 1=조금, 3=매우

	문항	0	1	2
1	성피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반복하거나, 어린 아동의 경우, 사건과 관련된 반복되는 상징적인 놀이를 보인다.	0	1	2
2	성피해 사건에 대한 꿈 또는 무서운 악몽을 꾼다고 보고한다.	0	1	2
3	평소보다 잠들기를 힘들어하거나, 잠을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0	1	2
4	사건 발생 이후, 불 꺼진 방이나,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해한다.	0	1	2
5	성피해를 생각나게 하는 유사한 상황(장소, 범인과 닮은 사람 등)이나 사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심리적 고통을 보인다. (예 : 불안, 우울, 두려움, 죄책감, 화, 짜증, 신경질 등)	0	1	2
6	성피해를 생각나게 하는 유사한 상황(장소, 범인과 닮은 사람 등)이나 사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신체적 긴장을 보인다. (예 : 두근거림, 땀 흘림 등)	0	1	2
7	성피해 사건에 대한 생각, 대화, 느낌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0	1	2
8	성피해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 사람, 활동을 피하려고 한다.	0	1	2
9	성피해 사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0	1	2
10	성피해 사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한다.	0	1	2
11	평소에 좋아하는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줄어들었다.	0	1	2
12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거나, 소원해 보인다.	0	1	2
13	정서적인 표정이나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예: 무표정, 감정둔마)	0	1	2
14	자주 멍하게 있거나, 딴 생각(공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0	1	2
15	과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화, 짜증, 신경질이 늘었다.	0	1	2
16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 : 주변에 누가 있는지 점검하기, 등 뒤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 함)	0	1	2
17	지나치게 크게 놀라거나, 쉽게 놀라게 된다.	0	1	2
18	집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보인다.	0	1	2

19	위축된 행동을 보인다.	0	1	2
20	사건 발생 이후, 자주 운다.	0	1	2
21	말수가 줄어들었거나, 말하기를 거부한다.	0	1	2
22	피해부위가 더럽다고 느껴져 몸을 자주 씻는다.	0	1	2
23	사건에 대한 자책, 자기비난을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행동이나 말한다.	0	1	2
24	얼굴표정을 억제한다.	0	1	2
25	걱정이나 우울해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0	1	2
26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을 한다.	0	1	2
27	과도한 수치심을 느낀다.	0	1	2
28	횡설수설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0	1	2
29	엄마(양육자)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보인다.	0	1	2
30	성피해 사건에 대한 걱정하는 행동과 말을 한다.	0	1	2
31	이유 없이, 무섭다고 하거나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2	여러 가지 걱정이 늘었다.	0	1	2
33	손에 땀이 많이 나거나, 근육이 긴장되어 있거나,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등의 긴장했을 때 나타내는 신체적 증상이 관찰되었다.	0	1	2
34	유령이나 귀신, 질병, 사고에 대한 공포를 보인다.	0	1	2
35	남자를 무서워한다.	0	1	2
36	많이 다투거나 싸운다.	0	1	2
37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진다.	0	1	2
38	짜증이나 신경질이 늘었다.	0	1	2
39	자주 화가 나고, 화가 나면 잘 진정되지 않는다.	0	1	2
40	사건 이후,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은 퇴행행동을 보인다. (예: 손가락 빨기, 배변문제, 매달리기, 어린아이처럼 말하기 등)	0	1	2
41	사건발생 이후, 성적이 많이 떨어졌거나, 학교에서 대한 지적을 많이 받는다.	0	1	2
42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0	1	2
43	사건에 대해 잊어버리고,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0	1	2
44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예 :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지 않음)	0	1	2
45	공상에 빠져 있거나 딴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멍하게 보인다.	0	1	2
46	성 피해 사건 이후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기를 자주 만지는 행위	0	1	2

	가 늘었다.			
47	그림을 그릴 때, 성기부위를 그린다.	0	1	2
48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려고 한다.	0	1	2
49	아동이 잘 모르는 남성에게 과도하게 친해지려하거나 유혹적이다.	0	1	2
50	화장실이나 자신의 방을 잠가놓고 오랫동안 혼자 있으려고 한다.	0	1	2
51	성에 관한 호기심이 늘었다. (예 : 물어보기, 인터넷 검색, 야한 동영상, 누드사진 등)	0	1	2
52	다른 사람의 성기에 대한 만지려 하거나 호기심을 보인다.	0	1	2
53	성관계를 상징하는 놀이 활동이 목격되었다. (예 : 인형을 포갠다. 인형의 옷을 벗기거나 체위를 묘사한다. 등)	0	1	2
54	그 나이 또래에 사용하지 않는 성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많이 알고 있다.	0	1	2
55	사건 발생 후, 스킨십을 자주 시도한다.	0	1	2
56	사건 발생 후, 일상적인 스킨십에 대해 과도하게 거부한다.	0	1	2
57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과도하게 화를 낸다.	0	1	2
58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과도하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회피한다.	0	1	2
59	순결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처녀성에 대한 걱정을 한다.	0	1	2
60	기타 특이한 행동을 기술하시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